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98
----------	------

2024년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박강산 의원(찬성 17명)  
나. 제안일 : 2024년 10월 15일  
다.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강산 의원)

####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위해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주민 자치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4호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 10. 23. ~ 10. 27.)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지원 범위에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li> <li>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li> <li>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ol>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생략)</p>	<p>제4조(지원 범위)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u></li> <li>5. (현행 제4호와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 주민자치회는 2024년 현재 16개 자치구 263개동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 연차별 운영 현황 ]

- 4개구 26개동('17) → 15개구 81개동('18) → 22개구 136개동('19) → 22개구 236개동('20) → 22개구 261개동('21~'22) → 19개구 274개동('23) → **16개구 263개동('24)**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24. 9월 말)

구 분	계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등	주민자치	기 타
프로그램(개)	27,704	22,068	982	229	4,356	23	6	40
비 율(%)	100	79.66	3.54	0.83	15.72	0.08	0.02	0.14

- 주민자치 :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 문화여가 :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 예능, 취미활동, 전시회 등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을 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절대다수를 차지(98.3%)하고 있으며, 30대 이하는 1.6%(164명)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 ]

연령	합계	30대이하	40대 이상~ 50대 이하	60대 이상
구성인원(명)	9,796	164	3,589	6,043
비율	100.0%	1.6%	36.7%	61.7%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 위원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 위원은 28명(광진구 1명, 금천구 1명, 노원구 8명, 은평구 4명, 관악구 2명, 강동구 6명, 중랑구 2명, 강서구 3명, 성북구 1명)으로 미미한 수준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 없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⑦ (생략)

- 또한, 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행정국은 기존 제4조제1항의 각호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의 구체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신설호는 구체적 지원항목이기보다는 주민자치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문 체계의 부조화가 있으며, 동조항 제4호(“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이미 포괄적 지원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은 추진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행정국은 2025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47.1%(5억 4천 3백만원) 감액한 6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5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 산출내역 ]

- 주민자치 교육 및 홍보 : 40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역
교육 인 영	주민자치위원	12,240	강사료 : 360천원 × 2과목 × 17회 = 12,240천원
	일반시민	2,880	강사료 : 360천원 × 8회 = 2,880천원
	강의 자료 및 홍보물 제작	4,880	강의 자료 및 홍보물(엑스배너 등) 제작 = 4,880천원
홍 보	홍보영상 제작	14,000	콘텐츠 제작 : 2,500천원 × 4편 = 10,000천원 제작 진행비 : 1,000천원 × 4편 = 4,000천원
	카드뉴스 제작	6,000	카드뉴스 제작 : 300천원 × 20편 = 6,000천원

- 주민자치 사업비 지원 : 500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지역특화 자치사업	500,000	· 지역특화 자치구 공모사업 실시(9개 사업) : 500백만원

-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 30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역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20,000	· 행사 개최비(행사장 조성 등) : 16,000천원 · 시상식 물품(표창등) 제작비 : 200천원 × 25개 = 4,000천원
자치구 홍보존 운영	6,000	· 홍보판넬 기획·제작비 : 240천원 × 25개 = 6,000천원
주민자치 정책포럼 운영	4,000	· 발제·토론자 수당 : 300천원 × 5명 = 1,500천원 · 포럼 자료집 제작비 : 20천원 × 100부 = 2,000원 · 물품 구입비 : 500천원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12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역
시유재산 보험료	1,500	· 시유재산 보험료 : 214,290원 × 7개소 = 1,500천원
시설 안전점검	10,000	· 노후 시유재산 정기 안전점검 : 1,430천원 × 7개소 = 10,000천원

※ 마을활력소 사업은 '22년 종료되었으나, 시유재산은 용도전환 추진하면서 유지관리 중

- 기타 사업운영 관련 평가수당 및 회의, 자료작성비 : 29백만원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역
평가위원 수당	4,800	· 용역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 150천원×8명×4회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회의 및 자료인쇄	24,064	· 자치구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 200천원×5회 · 실적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등 제작 : 23,045천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9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박강산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성준, 김영철,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서준오, 송도호,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최재란, 한 신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위해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제1항제4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지원 범위)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지원 범위를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고자 제4조(지원 범위)제1항제4호를 변경 신설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sup>1)</sup>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서울시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도 기준 1,153,346천원의 예산을 기편성<sup>2)</sup>하였음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주민자치회는 각 구청별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운영하기에 본 조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별도의 서울시 재정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2024년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1,153,346천원

사업목적

- 주민자치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성 강화
- 주민자치 교육 및 성과공유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내용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42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 사업기간 : 2024. 1~12월
  - 사업내용
    - 1. 지역 특화사업비 및 자치회관 사업비 등 지원
    - 2.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주민자치회 홍보 콘텐츠 제작
    - 4.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등
-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사업대상 : 커뮤니티 공간 8개소
  - 사업내용 : 커뮤니티 운영 공간 시설 안전관리 등